

의안번호	2200169
의 퇴 인	구자근의원
회 답 일	2024. 08.09.
추 계 번호	24D05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병급금지 규정 삭제,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참전유공자 유가족까지 의료지원 확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송지원 등을 할 경우, 2025년~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 수준으로 볼 경우 7조 4,886억원(연평균 1조 4,977억원),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 수준으로 볼 경우 16조원(연평균 3조 2,00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병급 허용	32%	7,167	6,948	6,733	6,526	6,326	33,700	6,740
	60%	13,438	13,027	12,624	12,237	11,861	63,188	12,638
수당 인상	32%	4,075	3,901	3,731	3,569	3,413	18,688	3,738
	60%	12,858	12,415	11,981	11,566	11,165	59,986	11,997
배우자 승계	32%	1,176	2,287	3,335	4,323	5,254	16,376	3,275
	60%	2,205	4,289	6,253	8,106	9,852	30,705	6,141
의료지원		1,158	1,135	1,113	1,094	1,075	5,575	1,115
수송지원		130	119	108	99	90	547	109
합계	32%	13,706	14,390	15,020	15,611	16,159	74,886	14,977
	60%	29,789	30,985	32,081	33,102	34,044	160,000	32,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단서 삭제(제1항)	의무규정
2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의무규정

		보장법」의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함(제7항)	
3	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받을 권리가 승계됨	의무규정
4	안 제7조(의료지원)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과 그 외의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의무규정
5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신설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참전유공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1항(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삭제	0	—
2	안 제6조제7항(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0	—
3	안 제6조의2(권리의 보호)	0	—
4	안 제7조(의료지원)	0	—
5	제10조의2(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신설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월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

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리를 승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를 다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추계함

- (병급금지 조항 삭제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신규 수급자)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규정한 단서를 삭제(제1항)할 경우, 기존에 병급금지 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가 신규로 참전명예수당(최저생계비 수준)을 지급받게 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
 -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월 지급액 인상)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
 -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지만,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에게 승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만 발표하고 있고 최저생계비는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산정)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계함
- 의료지원의 경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유가족 관련 자료 부재로 가족은 배우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하고, 유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선순위유족 1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또한, 위탁병원의 경우 75세 이상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유가족 연령자료 부재로 모든 참전유공자 가

구에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이 1인 있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 동안의 기간을 추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다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의 병급금지 규정 삭제(안 제6조 제1항)

(1) 대상자 수

-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이 받는 보상금, 무공수훈자가 받는 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받는 고엽제 수당 대상자가 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상기 보상금 및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이후 “병급금지”) 규정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3년 연말 기준 13만 2,479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7% 감소

[표 2]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감률
지급인원(명)	190,329	173,733	161,577	146,932	132,479	-8.7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의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2023년말 기준 9만 4,593명임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표 3]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 2023
(단위: 명)

	보상금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합계
인원	54,632	31,645	8,316	94,593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말 기준 병급금지조항으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
 고 있는 인원에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병급허용 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수급자수를 추정

[표 4] 병급허용 시 참전명예수당 신규수급자 추정: 2025~2029

(단위: 명)

병급 유형	2025	2026	2027	2028	2029
1. 참전명예수당+보상금	45,579	41,632	38,027	34,734	31,726
2. 참전명예수당+고엽제수당	26,401	24,115	22,027	20,119	18,377
3.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6,938	6,337	5,788	5,287	4,829
A. 병급인원(1+2+3)	78,919	72,084	65,842	60,140	54,9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현행법에 따른 병급금지 대상별 보상금 및 수당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2024년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으로 다른 보상금 및 수당보다 낮아, 추계에서는 병급금지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가 모두 보상금이나 무공영예수당, 고엽제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지급대상별 보상금 및 수당 현황: 2024

(단위: 천원)

구분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 법	고엽제법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 의용군인	재해 부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단가	608~3,681	608~3,681	480~500	1,612	426~2,577	568~1,175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만 발표하고 최저생계비는 발표하지 않고 있어, 추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산정) 등 두 개의 시나리오로 계산
- 최근 5년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 2020~2024년

(단위: 천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1,757	1,828	1,945	2,078	2,228	6.1

자료: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채무자 회생 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7]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2,365	2,510	2,663	2,826	2,999	6.1
32%	757	803	852	904	960	6.1
60%	1,419	1,506	1,598	1,696	1,799	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병급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병급금지 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던 모든 참전유공자([표 4])가 개정안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표 7])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2025~2029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일 경우 3조 3,700억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일 경우 6조 3,188억원으로 추계됨

[표 8] 병급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신규지급자(명)		78,919	72,084	65,842	60,140	54,932	—
지급 단가(천원)	32%	757	803	852	904	960	—
	60%	1,419	1,506	1,598	1,696	1,799	—
추가재정 소요(억원)	32%	7,167	6,948	6,733	6,526	6,326	33,700
	60%	13,438	13,027	12,624	12,237	11,861	63,188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안 제6조제7항)

(1) 대상자 수

-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8.7%를 적용하여 2025~2029년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9]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 2025~2029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110,527	100,955	92,212	84,227	76,9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0]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월 지급액	300	320	340	350	390	420	7.0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0%를 적용하여,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11]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 2025~2029

(단위: 천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감률
월 지급액	450	481	515	551	590	7.0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2]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 2025~2029

(단위: 천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최저생계비(A)	32%	757	803	852	904	960	6.1
	60%	1,419	1,506	1,598	1,696	1,799	6.1
현행법 적용에 따른 참전명예수당(B)		450	481	515	551	590	7.0
추가 지급단가(A-B)	32%	307	322	337	353	370	4.7
	60%	969	1,025	1,083	1,144	1,209	5.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25~2029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일 경우 1조 8,688억원,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일 경우 5조 9,986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명)		110,527	100,955	92,212	84,227	76,933	—
지급 단가(천원)	32%	307	322	337	353	370	—
	60%	969	1,025	1,083	1,144	1,209	—
추가재정소요(억원)	32%	4,075	3,901	3,731	3,569	3,413	18,688
	60%	12,858	12,415	11,981	11,566	11,165	59,986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안 6조의2)

(1) 대상자 수

-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승계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기존수급자+개정안에 따라 병급 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신규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미망인 수를 추정하고, 전년도 미망인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미망인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미망인 수 누계를 추정

- －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 배우자의 사망률은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함

[표 14]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 2025~2029

(단위: 명)

배우자 승계	2025	2026	2027	2028	2029
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189,446	173,039	158,054	144,366	131,864
추정 사망자 수	17,962	16,406	14,985	13,688	12,502
신규 미망인 수	12,950	11,829	10,804	9,869	9,014
미망인 누계	12,950	23,730	32,613	39,840	45,627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급단가

-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는 최저생계비 수준과 같음

[표 15]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추정: 2025~2029년

(단위: 천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기준중위소득	2,365	2,510	2,663	2,826	2,999	6.1
32%	757	803	852	904	960	6.1
60%	1,419	1,506	1,598	1,696	1,799	6.1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2025~2029년 기간 동안 추가재정소요는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일 경우 1조 6,376억원, 1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일 경우 3조 705억
원으로 추계됨

[표 16]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 수(명)		12,950	23,730	32,613	39,840	45,627	-
지급 단가(천원)	32%	757	803	852	904	960	-
	60%	1,419	1,506	1,598	1,696	1,799	-
추가재정 소요(억원)	32%	1,176	2,287	3,335	4,323	5,254	16,376
	60%	2,205	4,289	6,253	8,106	9,852	30,705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유가족 의료지원(안 제7조)

(1) 지원대상

- 개정안은 진료비용 감면부분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에서는 참
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위탁병원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와 그 유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해 보훈병원²⁾은 본인부담 진료비
에 대상별 감면비율(30~60%)을 적용하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병원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본인부담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60%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는 동법 제4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보훈병원만을 지정하였음.

[표 17]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진료지원 제도 현황

의료기관	진료대상	지원범위
보훈병원 (전국 6개)	▶ 국가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60%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30~6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 유족 - 75세 이상 보상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인 경우	▶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6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미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의료지원 여부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 보훈병원은 기존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수급자 유가족이 신규지원 대상이며, 위탁병원은 보상금 수급자를 제외한 기존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수급자의 유가족이 신규지원 대상임

[표 18]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의료지원 비교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기존 참전명예수당	미지원	지원	미지원	지원
보상금	지원	지원	75세이상 지원	75세 이상 지원
고엽제수당	미지원	지원	미지원	75세 이상 지원
무공영예수당	지원	지원	미지원	75세 이상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의료지원의 경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유가족 관련 자료 부재로 가족은 배우자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하고, 유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선순위유족 1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
- 또한, 위탁병원의 경우 75세 이상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유가족 연령자료 부재로 모든 참전유공자 가

구에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이 1인 있는 것으로 가정함

[표 19]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료지원 대상 추정: 2025~2029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배우자	참전명예수당(A)	79,690	72,789	66,485	60,727	55,468
	고엽제수당(B)	19,035	17,387	15,881	14,506	13,250
	무공영예수당(C)	5,002	4,569	4,173	3,812	3,482
선순위 유족	참전명예수당(D)	306,824	316,396	325,139	333,124	340,418
	고엽제수당(E)	42,131	44,417	46,505	48,413	50,155
	무공영예수당(F)	75,706	76,307	76,856	77,357	77,815
개정안에 따른 신규지원 대상	보훈병원 (A+B+D+E)	447,680	450,988	454,010	456,771	459,292
	위탁병원 (A+B+C+D+E+F)	528,388	531,864	535,039	537,939	540,588

주: 배우자는 생존 참전유공자 수에 유배우자율(72.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선순위유족은 2023년 말 까지 해당 수당을 수령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수에 신규 사망자수를 더하여 산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원단가

□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0]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지원단가 현황

(단위: 회,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0
	진료단가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5.7
위탁병원	수진횟수	12.1	10.1	8.4	8.3	8.7	-7.9
	진료단가	19,591	21,721	20,261	24,360	22,756	3.8

자료: 국가보훈부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진료횟수 및 진료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1] 국가유공자 유족의 진료횟수 및 지원단가 추정: 2025~2029

(단위: 회, 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보훈병원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0
	진료단가	75,141	79,428	83,960	88,750	93,814	5.7
위탁병원	수진횟수	7.4	6.8	6.3	5.8	5.3	-7.9
	진료단가	24,525	25,461	26,432	27,441	28,488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 수진횟수, 진료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2029년까지 5,574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2] 의료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훈병원	20,184	21,493	22,871	24,323	25,853	114,723
위탁병원	95,599	91,991	88,466	85,029	81,685	442,770
합계	115,783	113,484	111,337	109,352	107,538	557,49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수송시설 이용지원 할인

(1) 지원대상

-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은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와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고엽제수당 수급자를 포함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참전유공자 중 보상금 수급자의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대부분 상이유공자³⁾로 현행법 적용시에도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이

3) 참전유공자 중 보상금 수급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이며, 이 중 현행법 적용 시 수송시설이용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는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현재 5명으로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됨

[표 23]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전체 참전유공자 수	143,866	131,407	120,027	109,633	100,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원단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예산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2022년 107억 2,9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024년까지 유지되고 있음

[표 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민영버스	9,605	7,919	8,484	8,484	8,484
고속철도	2,403	2,163	2,163	2,163	2,163
내항여객선	82	82	82	82	82
합계	12,090	10,164	10,729	10,729	10,729

- 2023년 말 기준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1인당 지원단가는 9만 341원임
 -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761명이며, 2023년 수송시설 이용지원 예산은 107억 2,900만원으로 1인당 지원단가는 9만 341원임

(3)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송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2029년까지 719억 8,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5] 수송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수송지원	12,997	11,871	10,843	9,904	9,047	54,66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병급금지 규정 삭제,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참전유공자 유가족까지 의료지원 확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송지원 등을 할 경우, 2025년~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 수준으로 볼 경우 7조 4,886억원(연평균 1조 4,977억원),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채무자 회생 기준 생계비) 수준으로 볼 경우 16조원(연평균 3조 2,000억원)으로 추계됨

[표 2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 2025~2029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병급 허용	32%	7,167	6,948	6,733	6,526	6,326	33,700	6,740
	60%	13,438	13,027	12,624	12,237	11,861	63,188	12,638
수당 인상	32%	4,075	3,901	3,731	3,569	3,413	18,688	3,738
	60%	12,858	12,415	11,981	11,566	11,165	59,986	11,997
배우자 승계	32%	1,176	2,287	3,335	4,323	5,254	16,376	3,275
	60%	2,205	4,289	6,253	8,106	9,852	30,705	6,141
의료지원		1,158	1,135	1,113	1,094	1,075	5,575	1,115
수송지원		130	119	108	99	90	547	109
합계	32%	13,706	14,390	15,020	15,611	16,159	74,886	14,977
	60%	29,789	30,985	32,081	33,102	34,044	160,000	32,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저생계비를 생계급여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산정) 등 두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병급허용 및 배우자 승계 시에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